

변상금 사전 통지서

대상자	① 성명	금호제1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	② 생년월일			
	③ 주소	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1길 41, 2층 (금호동4가)	④ 전화번호	02-2298-2854		
⑤ 부과내용						
재 산 의 표 시			점유면적 (㎡)	부과기간	변상금 (원)	비 고 (소유자)
소 재 지	지 목	지 적 (㎡)				
금호4가 200-16	도로	1,943.00	1,625.00	2010. 11. 1. ~ 2012. 8. 10.	668,551,850	서울시
금호4가 200-12	도로	44.00	44.00		18,102,310	서울시
금호4가 243-15	도로	7.00	7.00		1,024,700	서울시
금호4가 243-16	도로	26.00	26.00		3,806,040	서울시
금호4가 259-03	도로	8.00	8.00		1,171,090	서울시
금호4가 200-14	도로	66.00	49.00		20,420,310	성동구
금호4가 439-03	도로	23.00	15.00		6,171,230	성동구
금호4가 439-04	도로	16.00	7.00		2,879,900	성동구
금호4가 443-01	도로	33.20	27.00		11,108,230	성동구

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」 제89조 및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 제84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·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·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2015년 11월 20일까지 불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,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·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·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- 불임 1.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
2.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

2015년 11월 일

성 동 구 청 장 (인)

금호제1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귀하

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

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제89조 및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제8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변상금 부과 통지내역				의 견
소재지	점유면적 (㎡)	부과기간	변상금 (원)	
금호4가 200-16	1,625.00	2010. 11. 1. ~ 2012. 8. 10.	668,551,850	
금호4가 200-12	44.00		18,102,310	
금호4가 243-15	7.00		1,024,700	
금호4가 243-16	26.00		3,806,040	
금호4가 259-03	8.00		1,171,090	
금호4가 200-14	49.00		20,420,310	
금호4가 439-03	15.00		6,171,230	
금호4가 439-04	7.00		2,879,900	
금호4가 443-01	27.00		11,108,230	

그 밖의 의견 (입증서류 등 첨부)

신청인 주 소: _____
 성 명: _____ (서명 또는 인)
 생 년 월 일: _____
 전 화 번 호: _____

년 월 일

성 동 구 청 장 귀하

